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99
----------	-----

2016. 6. 23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6월 14일

-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은상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시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
- 충청북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근거법령 추가 (안 제1조)

- (현행) 지방자치법 제90조, 제91조
- (개정) 지방자치법 제90조, 제9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

○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 추가 (안 제5조)

- (현행)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- (개정)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,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3. 검토보고 요지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시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, 충청북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399호
의결 연월일	2016년 월 일 (제348회)

**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6년 5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5월 31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시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
- 충청북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추가 (안 제1조)
 - (현행) 지방자치법 제90조, 제91조
 - (개정) 지방자치법 제90조, 제9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
-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 추가 (안 제5조)
 - (현행)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 - (개정)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,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”를 “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, 제91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</u>	<u>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, 제91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에 따라----- ----- -----</p>
<p>제5조(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직원의 정수) ----- ----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</p>

관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생략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
1. 별정직공무원
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

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】

제29조의3(시·도의회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) ① 시·도의회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·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